

# 2019년 제3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b>회의명</b>	◦ 2019년 제3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b>일 시</b>	◦ 2019. 9. 30.(월) 15:00~17:00		
<b>장 소</b>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b>참 석</b>	◦ 재적위원 : 28명		
	◦ 참석위원 : 21명 ※ 대리참석 4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건리(공동의장)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상학(공동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 박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운영관리팀장 이민형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조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영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부장 한은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양철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양세영
		여성신문 미디어-사업본부 본부장 신준철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양윤석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	한국윤리경영학회 사무국장 구자숙
		한국행정연구원 경영부원장 안혁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강건구
		내부제보실천운동 대외협력위원장 전경원	
중소기업중앙회 청렴문화팀장 김영길(代)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경영팀장 최문석(代)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략기획실 부장 오상호(代)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김성현(代)		
◦ 불참위원 : 7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담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박헌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담당부장 김수희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김영수	한국부패학회 연구위원장 이정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은영		
◦ 총괄분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공영제추진팀장 구의청		

회의명	◦ 2019년 제3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 교육분과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안종훈	
	◦ 경제분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이호영	JT저축은행 상임감사위원 박영기
보고 안건	◦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준비 경과		
심의 안건	<p>◦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 수정 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민관협의회에 상정</p> <p>(선분양 제도, 후분양 제도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분양 관련, 후분양제도가 일반화 되지 않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이 안건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 안건이 대표적인 생활적폐의 사례라고 생각함</li> <li>- 현재 제안문 논의의 주제가 선분양 제도인데, 이럴 경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선분양 제도를 지지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에 ‘후분양 제도를 지향하나’의 표현을 넣어야 함</li> <li>- 아파트 후분양 제도를 지향하는 것이 단언할 수 있는 정도로 더 장점이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이 표현을 기재하는 것은 더 고민해봐야 함</li> <li>- 투명성의 측면에서는 후분양 제도를 동의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후분양 제도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후분양 제도를 지향한다고 단언할 수 없음</li> <li>- 모든 상품은 완제품을 파는 것이 원칙이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음. 도면 계약이 좋은 건지, 완공 후 계약이 좋은 건지는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님</li> </ul> <p>(아파트 설계도면, 내·외장재 변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내용을 보면 ‘공사 당시의 설계도면’이 있는데, 공사 당시의 설계도면에 대한 명확한 시점 제시가 필요함</li> <li>- 또한, 중요 내·외장재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제안</li> </ul>		

회의명	<p>◦ 2019년 제3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p>
	<p>하는 것은 불가피한 변경에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표현은 적절치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 뿐 아니라 단가의 변경도 승인 시보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야 건설사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음</li> <li>- 마감자재를 변경할 때 변경사유까지 밝히고 감리사항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함</li> </ul> <p>◦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p> <p>→ 수정 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민관협의회에 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제안을 더 강화하여, 이미 부정으로 임용된 사례에도 적용해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급으로 승진 제한 또는 채용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재인증 절차를 가지는 것 등이 필요함</li> <li>-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인증은 새로운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봐야 함</li> <li>-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하는 업무가 변호사 등과 같은 다른 전문직과 같이 자격을 줄만큼의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li> <li>- 사무직원에 특화된 인증제가 있어야 할 것인고, 인증제 도입은 규제에 해당하므로 일선학교에서 수용할 것인지도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함</li> <li>-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지방공무원 선발 시험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선발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완전 다른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과 같음</li> </ul> <p>→ 새로운 시험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시험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p> <p>기존 공무원 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제시일 뿐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무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채용 및 허위공시할 경우 기존의 재정결함보조금 회수 한다</li> </ul>

회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제3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li> </ul>
	<p>든지 친인척 채용시 재정결함보조금 일부를 감액한다든지 등의 강한 제도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이 투입되지만 사립학교는 재단 설립 시 재산 출현을 통해 운영 하는 형태임.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운영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함</li> </ul> <p>사립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방향은 맞지만 제도의 즉시 도입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p> <p>→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곳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만들자는 것이고 각각의 기관에 운영을 위임을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채용 방식과 직급에 기준이 있는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 후 직급, 처우 등 제한이 없이 이사장 재량인 사항임</li> </ul> <p>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사무직원의 임용 절차는 개선이 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가족채용 제한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채용도 관련 조항에 해당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음</li> </ul> <p>근본적으로 사립학교 이사 또는 학교장의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li> <li>→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li> </ul>